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해설

### 1.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 및 시행령 개정의 추이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의 축소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022년 5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2년 9월 10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지평 형사그룹은 2022년 5월 **Legal Update**를 통해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사항에 대해 안내드렸는데, 그 주된 내용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축소’, ‘사법경찰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자의 범위에서 고발인을 제외’,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 축소’ 등 입니다[[Legal Update 검경수사권 추가 조정에 관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해설](#)].

그러나 이러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법 개정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수사권 원상복구(소위 ‘검수원복’)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개정법과 동시에 시행(2022년 9월 10일) 되었습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핵심적인 변경 사항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분류체계 개편’(제2조) 및 ‘직접 관련성 규정 보완’(제3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정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중요 범죄”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 것입니다.

### 2. 주요 개정 사항

#### 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 범위의 확대

개정된 「검찰청법」 및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9월 10일부터 적용되는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순번	법적근거		범죄 유형
	검찰청법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1	검찰청법 제 4조 제1항 제1호 가목	부패범죄 (제2조 제1호)	사무의 공정을 해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범죄의 은폐나 그 수익의 은닉에 관련된 범죄로서 별표1에 규정된 죄
2		경제범죄 (제2조 제2호)	생산·분배·소비·고용·금융·부동산·유통·수출입 등 경제 각 분야에서 경제질서를 해하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기 또는 제3자의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를 도모하는 범죄로서 별표2에 규정된 죄
3		사법질서 저해범죄 (제2조 제3호 가목)	무고·도주·범인은닉·증거인멸·위증·허위감정통역·보복범죄 및 배심원의 직무에 관한 죄 등 국가의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로서 별표3에 규정된 죄
4		의무고발 관련범죄 (제2조 제3호 나목)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된 범죄
5		검찰청법 제 4조 제1항 제1호 나목	경찰공무원 관련범죄

6	검찰청법 제 4조 제1항 제1호 다목	직접관련성 범죄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	----------------------	-------------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별표1 내지 3은 소위 “부패범죄”, “경제범죄”, “사법질서 저해범죄”에 해당하는 유형을 아래와 같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사실상 종전에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던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회복하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범죄 유형	세부 유형
소위 “부패범죄” [별표1]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의 부패범죄에 해당하는 죄</li> <li>「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부패행위 관련 부패범죄</li> <li>「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죄 등 부패방지 및 공직윤리 관련 부패범죄</li> <li>「정치자금법」 제46조부터 제49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등 정치자금 및 공직선거 관련 부패범죄</li> <li>「의료법」 제88조 제2호, 제8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죄 등 불법 금품 수수 관련 부패범죄</li> <li>「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제41조, 「사립학교법」 제73조, 제73조 의2에 해당하는 죄 등 보조금·학교회계 관련 부패범죄</li> <li>「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에 해당하는 죄 등 범죄수익·자금세탁 관련 부패범죄</li> </ol>
소위 “경제범죄” [별표2]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기·횡령·배임 등 「형법」 상 경제범죄</li> <li>「상법」 제622조부터 제629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등 기업 관련 경제범죄</li> <li>「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등 조세 관련 경제범죄</li> <li>「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부터 제446조에 해당하는 죄 등 금융 관련 경제범죄</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4조부터 제127조까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0조에 해당하는 죄 등 공정거래 관련 경제범죄</li> <li>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7조에 해당하는 죄 등 기술 및 자원 보호 관련 경제범죄</li> <li>7. 「특허법」 제225조부터 제229조의2까지, 「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등 지식재산권 관련 경제범죄</li> <li>8.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등 개인정보·정보통신 관련 경제범죄</li> <li>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부터 142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등 부동산·건설 관련 경제범죄</li> <li>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에 해당하는 죄 등 보건의·마약 관련 경제범죄</li> <li>11. 폭력 조직·기업형 조폭·보이스 피싱 등 경제범죄 관련 조직범죄</li> <li>12.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부터 제49조의2까지에 해당하는 죄 등 사행행위 관련 경제범죄</li> </ol>
<p>소위 “사법질서 저해범죄” [별표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에 해당하는 죄</li> <li>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에 해당하는 죄</li> <li>3. 「형법」 제2편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제145조부터 제151조까지), 같은 편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제152조, 제154조 및 제155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편 제11장 무고의 죄(제156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죄</li> </ol>

나. 범죄 피해금액에 따른 기준 폐지

종전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은 “부패범죄”, “경제범죄”라고 하여도 범죄 피해금액이 5천만 원, 3천만 원 등 일정 액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폐지되므로 더 이상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다. 직접 관련성 판단기준의 폐지

2021년 12월 30일 시행된 종전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3조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와 관련하여 “직접 관련성”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종전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제3조가 삭제되어 직접 관련성에 대한 판단은 해석의 영역으로 남게 되었고,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4항 별건수사 제한 조항이 직접 관련성을 판단하는 가장 주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변경되지 않은 사항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변경되는 내용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중요 범죄의 범위일 뿐이고,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21년 1월부터 시행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인정’을 골자로 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내용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평 형사그룹에서는 2021년 4월 **Legal Update(3부작)**를 통해 ‘경찰의 사건 송치 이후 절차 진행’,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절차 진행’ 등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다음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egal Update 검경수사권 조정 법령 본격 시행](#)].

법무법인(유) 지평 형사그룹

최세훈 변호사	T. 02-6200-1817	E. shchoi@jipyong.com
이재승 변호사	T. 02-6200-1952	E. jslee@jipyong.com
신재형 변호사	T. 02-6200-1950	E. jhshin@jipyong.com
이상협 변호사	T. 02-6200-1691	E. shlee2@jipyong.com